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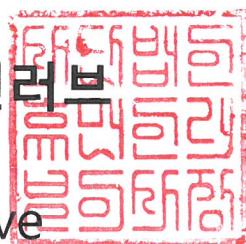
휴먼인러브 정관



Human in Love

사단법인 휴먼인러브

Human in Love



휴먼인러브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휴먼인러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HUMAN IN LOVE" 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인류애를 바탕으로 빈곤 및 재난 취약계층의 자립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지구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지구촌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내용)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개발국의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개발협력사업
2. 저개발국에 대한 보건의료,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국내, 외 재난 발생지역의 긴급구조 및 구호, 복구, 복지사업
4. 국외 빈곤 및 재난 취약계층, 전쟁 및 분쟁지역 이재민의 이주, 교육, 정착 지원사업
5.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는 환경보호사업
6.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범위 내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원칙)

1. 법인의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2. 법인은 목적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3. 법인은 목적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범주에 따라 회원을 구성한다.

- ① 정회원 :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단, 2011년 7월 29일 이전 회원에 가입한 자는 정회원으로 규정한다.)
- ② 준회원 : 본 법인의 활동 목표 및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개인 또는 집단
- ③ 특별회원 :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 또는 집단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 중 정회원에 한해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정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정회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재적구성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포함)
- ② 감사 2인 이하



제11조 (임원의 선출)

- ① 본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총회의 결의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분쟁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제1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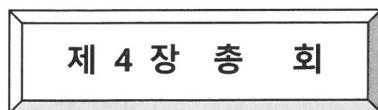
제14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정회원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그 임기는 차기 총회 때까지로 하고, 2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단, 이사장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정회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을 승계한다.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2. 사무총장

3. 정회원 1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의원

제18조 (대의원 선출) 대의원 선출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제17조 제1호, 제2호의 경우, 정관에 따른다.
2. 제17조 제3호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대의원 선출규칙에 의해 선출한다.

제19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메일 포함)로 각 재적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재적구성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재적구성원에게 서면(전자메일 포

함)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정회원 제명에 대한 결의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재적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 (재산의 구분)

-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 (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수입금)

- ①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각종 기부금,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 ②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 ③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33조 (출연 및 융자)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연이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 (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 회계연도 개시부터 예산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재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7 장 사무부서와 사업을 위한 조직

제36조 (사무국)

- ①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 전반을 관장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7조 (위원회)

- ①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분야의 위원회 등의 조직을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8 장 수익사업

제38조 (수익사업)

- ① 본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업 (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 교육실 대여 등)
 2. 출판사업 (활동보고서, 연구보고서, 강연집 등)
 3. 물품판매업 (목적사업과 관련된 액세서리, 문구류 등 물품 제작 판매)
 4. 기타 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
- ②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전액 본 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 9 장 보 칙

제39조 (법인해산)

-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구성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업무보고 및 공개)

-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 법인의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 법인의 홈페이지에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42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위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발기인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별지 1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수 량	금액(가액)	비 고
예 금	1계좌	70,000,000	일반예금

